

재위탁과 그레이트 서사의 규약

원리 명세서

- A. 반면에, 통합 감리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성서, 신학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해 신중한 성찰, 토론 및 기도 후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 B. 반면에, 통합 감리교회와 그 반면에, 2019년 2월 성에서 열린 총회의 특별 회기에서의 통합 감리교 교회. 루이스는 특히 LGBTQ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그들의 차이를 해결하지 않았다. 성서, 신학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해 신중한 성찰, 토론 및 기도 후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 C. 반면, 연합 감리교회와 그 회원들은 교회가 교회를 가로막고 있고, 교회의 증인과 임무가 방해받고 있으며, 교회는 물론 신도들도 부상을 입었다.
- D. 반면에, 통합 감리교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세계의 변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우리의 오랜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 E. 반면에, 통합 감리교회는 모든 인종, 성적 지향성, 성별, 국가 출신, 연령 및 사회적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 F. 반면, 서명된 자는 존 암바스 주교와 다른 중앙 회의 주교들에 의해 시작된 협의의 결과로 함께 모였고, 교단의 다양한 선거구를 대표하여 교회가 교착 상태를 친절하고 위엄 있게 해결하도록 요청받았다.
- G. 반면에, 서명된 자는 우리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분리에 의한 통합 감리교회를 제안하고, 교회의 각 부분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 평등성, 진실성 및 존중을 인정하면서 신학적 이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 H. 반면, 밀줄인 이들은 세계 연합 감리교회의 지역적 맥락과 다른 관점을 인정받아,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가진 충실한 단체로 분리를 제안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서명한 이들은 통합 감리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이 화해와 분리를 통한 은혜의 의정서에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아티클 I: 이 프로토콜에 대한 동의 및 약속

1. 이 의정서는 통일감리교회의 하한선, 목사, 주교 각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서명된 추가 서약서는 이 프로토콜과 그 구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지지할 것이다. 또한 서명된 각자는 2020년 통합 감리교 총회에서 의결하고 채택할 의정서의 구현 법안을 원고하는 데 동의한다.
2. 연합 감리교회와 그 회원들은 예우하고 품위있는 분리를 통해 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세계의 감리교 사명을 증식시키기를 열망한다.
3. 서명된 자는 2020년 통합 감리교 총회에서 의결되고 채택될 의정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서명된 자는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법률의 합헌성 또는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통합 감리교 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프로토콜과 모든 활성화된 법률을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옹호한다.
4. 서명된 자는 2020년 통합 감리교 총회에서 서명된 자는 프로토콜 구현에 필요한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된 단체나 조직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동의한다. 제1조, 제1항의 약속과 일관되게, 서명자는 프로토콜의 원칙과 조항 및 시행 법률의 구현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나 기타 노력에 참여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프로토콜에 대한 모든 서명자가 그러한 노력이 프로토콜과 일치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한 다른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채택될 의정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서명된 자는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법률의 합헌성 또는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통합 감리교 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프로토콜과 모든 활성화된 법률을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옹호한다.
5. 서명자는 이 프로토콜의 각 조항이 전체와 통합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으며 나머지 프로토콜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통합 감리교 사법 위원회 또는 민사 법원에 의해 프로토콜의 어떤 조항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프로토콜의 전체는 무효로 간주된다.
6. 서명된 자는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의 추가 자산이나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금액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아티클 II: 용어 정의

1. LGBTQ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표현으로 인해 유사한 차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하위집단을 포함하는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약자의 약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유어(비이진, 자기 식별자)를 나타낸다.

2. 이 프로토콜에 따른 감리교 교파는 이 프로토콜과 통합 감리교회를 통해 생성된 모든 감리교 교파를 의미한다.
3.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는 이 프로토콜에 따라 새로운 교파가 형성된 후 통합 감리교회를 의미한다.

4.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의 조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이 계약을 의미한다.**

아티클 III: 프로토콜 구현 프로세스 및 일정

1.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 통합 감리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과 일정을 채택할 것이다
 - a. 이 프로토콜에 따라 새로운 감리교 교파를 형성하려는 의도의 주교회의 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은 2021년 5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b. 중앙 컨퍼런스는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가 아닌 이 프로토콜에 따라 감리교 교파와 제휴할 3분의 2의 투표로 선택할 수 있다. 중앙 회의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의 한 부분으로 남는다. 이러한 제휴 투표는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 c. 연간 회의는 중앙 또는 관할권 회의에서 이 프로토콜에 따른 감리교 교파 중 하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연차 총회가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의 일부로 남는다. 연차 총회가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가 아닌 이 프로토콜에 따른 종파와의 제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연차 총회 총에서 이러한 제휴 투표를 실시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연차총회 투표에서 20%의 지지를 받는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제휴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분리 후 UMC 이외의 이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진 감리교 교파와 제휴하기 위해서는, 제휴에 대한 투표는 그 투표의 57%가 지지해야 한다.
 - d. 연례 총회에서 선택한 이 프로토콜에 따라 감리교 교파와 다른 소속을 원하는 모든 지역 교회는 제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지역 교회가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연례 총회에서 선택한 이 프로토콜에 따라 감리교 교파의 일부로 남아 있다. 이러한 투표가 있을 경우, 교회 평의회는 다른 소속을 선택하는 동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출석자의 단순한 과반수 또는 3분의 2의 투표 문턱을 결정하고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투표해야 한다. 다른 소속을 선택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교회 평의회가 요청한 지 60일 이내에 개최된 교회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회 회의는 이러한 교회 회의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 교육감과 협의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이 프로토콜에 따라 지역 교회에 의한 가입에 대한 결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아티클 IV: 이 프로토콜의 금융 계약 조건

1. 이러한 구조 조정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감리교회의 재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a. 지역 교회 재산, 자산 및 부채

- i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가 아닌 이 프로토콜에 따라 감리교 교파와 제휴하는 지역 교회는 그 자산과 부채를 보유한다. 지역 교회가 분리될 때 소속된 통합 감리교회의 연례 총회는 신뢰조항을 행사하지 않으며, 모든 신뢰조항의 규정에서 해당 지역 교회를 해제해야 한다. 지역 교회는 분리되기 전에 분리일을 통해 연결 책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 시, 그러한 지역 교회는 해당 대출 조건에 따라 상환되어야 하는 연차 총회의 이전에 문서화된 대출금 이외의 금액을 연차 총회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 ii 그러한 지역 교회(또는 그 후계자)가 나중에 폐교 또는 그들이 제휴하는 이 의정서에 따라 감리교 교파의 종결을 선택하는 경우, 그러한 지역 교회의 재산은 그 지역 교회가 미래에 차지하는 비례적 몫의 금액으로 위스페스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연금 부채
- iii 지역 교회가 통합 감리교회에서 탈퇴하고 이 프로토콜에 따라 감리교 교파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경우, 그것은 통합 감리교 교단의 규율 책 2553항을 준수해야 한다.

b. 연간, 관할권 및 중앙 회의의 재산, 자산 및 부채

- i 연간, 관할구역 및 중앙회의의 재산, 자산 및 부채는 이 프로토콜에 따라 각각 만드는 이 프로토콜에 따른 감리교 교파(Methodist division)로 제휴 결정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한다.

c. 금융협정

- i 총액 25만 달러는 이 의정서가 형성되고 통합된 후 이 의정서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통주의 감리교 교파에게 후속 사분면적을 두고 재무행정학 총회에서 지급한다.
- ii 총액 2백만 달러는 다음에 이어지는 사분면에 걸쳐 형성되고 통합된 후 본 프로토콜에 따라 제정된 잠재적 추가 감리교 액수에 대한 지불에 대해 재무 및 관리 총회에 의해 에스스로 처리된다.

- iii. 체계적인 인종 폭력, 착취, 차별의 시스템에서 감리교 운동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러한 해악의 영향을 다루는 공정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총 39백만 달러를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예산 권고안에 배정한다. 인종 차별의 죄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우장실 이러한 배정된 기금의 목표는 아시아, 흑인, 히스패닉-라티노, 아메리카 원주민 및 태평양 섬주민 지역사회에 의해 부처를 강화하고, 교회의 통치와 의사결정에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의 완전한 참여를 장려하며,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는 필수적인 일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대학의 지도자들 중 n명이 유지될 것이다. 국가 계획, 교회의 프로그램 기관 및 주교회의와 협의하여 연결 표는 이러한 지정된 자금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이 금액의 13만 달러는 분리 후 전통적 방법론 교파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기금을 받지 않고 대신 이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가능했다. 이 13만 달러의 총액은 이 목적을 위해 분단 후 통합 감리교회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또 분리 후 통합감리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 8년간 총 39M달러의 기부금을 낸다. 이 프로토콜에 따른 전통적인 감리교 교파와 일치하는 교회들은 만약 그들이 이 8년 기간 동안 그러한 참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민족 집단에 봉사하는 프로그램과 보조금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 iv. 연합 감리교회의 연금 계획은 그들이 제휴하는 이 의정서에 따라 감리교 교파와는 무관하게 모든 현재 성직자와 통합 감리교회에 소속된 일반 직원에 대해 유지될 것이다. 서명된 서명은 본 프로토콜에 따른 감리교 교파에 의한 미지급 연금 부채의 가정을 다루는 위스페스가 제출한 기존 및 제안된 법률과, 본 프로토콜에 따른 감리교 교파와 관련된 성직자의 연금 계획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한다. 일반 이사회와 기관을 포함하여 통합 감리교회의 다른 모든 재산, 자산 또는 부채는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와 이 프로토콜에 따른 기타 감리교 액면에는 이러한 재산,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청구 또는 권리가 없다.

- v.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의 주교회의는 이 의정서에 따라 형성된 감리교 교파와 생태학적 합의를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한 상투적 합의에는 이사회 및 기관의 참여, 다양한 사명 활동의 지속, 또는 상투적 합의의 범위 내의 다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아티클 V: 모라토리엄

1.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총의 표현 중 하나로, 서명은 자칭 동성애자 또는 동성 결혼과 관련된 규율의 제한을 다루는 모든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가 2020년 1월 1일부터 1차 회의의 후회를 통해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의 소속이다. 성직자는 그러한 불평이 보류되는 동안 계속해서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서명된 자는 폐쇄를 제안하는 교회가 있을 경우 교회와 연례 회의는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을 제외하고, 교회 폐쇄에 대한 최종 조치를 2020년 통합 감리교 총회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참여 부족이나 재정 부실로 인해 교회를 폐쇄하려는 시도

아티클 VI: 총회 2020

모든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미래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교회의는 일반 회의 위원회 및 기타 교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음을 달성하도록 요청 받는다.

1. 주교회의는 2020년 총회의 개회 전에 실시될 이 의정서와 관련된 법률의 합헌성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사법 위원회에 요청한다.
2. 주교회의는 2020년 총회 이전에 이 프로토콜의 재정적 영향과 관련된 보고서를 재무 및 행정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 주교회의는 총회의 위원회와 협력하여, 프로토콜에 대한 총회의 의제 및 제시해야 할 관련 시행 법률의 적절한 시기를 확인한다.
4. 주교회의는 2020년 총회의 휴회에서 이 프로토콜에 따라 감리교 교파의 다른 표현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5. 주교회의는 분리 후 통합 감리교회의 총회의 첫 번째 회기를 소집하여,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역 회의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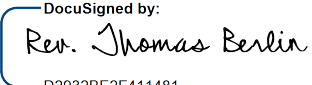
- 6. 주교회의는 미국 지역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전통적 계획 입법의 폐지를 포함한 규율 서적의 적응적 부분 및 LGBTQ 인력과 관련된 모든 다른 부분의 변화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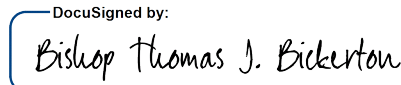
아티클 VII: 의정서 서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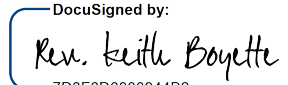
중재자 케너트 알(Kenneth R)과 자발적으로 복수의 비밀 중재 회의에 참가한 후 서명된 사람들. 파인버그는 이 프로토콜의 조건에 동의하며, 프로토콜의 구현에 필요한 모든 법률의 개발을 포함하여 프로토콜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적이고 개별적으로 작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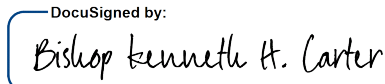
2019년 12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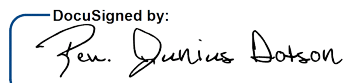
성명:  DocuSigned by: C1F3EACBD85A455...
Bishop Christian Alsted, Nordic-Baltic Episcopal Area

성명:  DocuSigned by: D2932BE2F411481...
Rev. Thomas Berlin, representing UMC, UMCNext, Mainstream Uniting Method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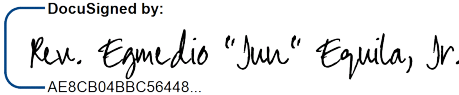
성명:  DocuSigned by: 068EA6131770497...
Bishop Thomas J. Bickerton, New York Episcopal Area


성명:  DocuSigned by: 7D3F6D6800944B2...
Rev. Keith Boyette, representing The Confessing Movement, Good News, IRD/UM Action, and the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성명:  DocuSigned by: D28B46BB40EF4C0...
Bishop Kenneth H. Carter, Florida Episcopal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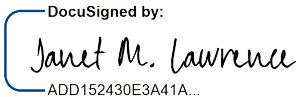
성명:  DocuSigned by: 88AE98C246D34BB...
Rev. Junius Dotson, representing UMCNext, Mainstream UMC, Uniting Method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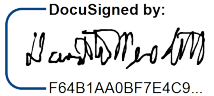
성명:  DocuSigned by:
385D631F4788496...
Bishop LaTrelle Easterling, Washington Episcopal Area


성명:  DocuSigned by:
AE8CB04BBC56448...
Rev. Egmedio "Jun" Equila, Jr., Philippines Central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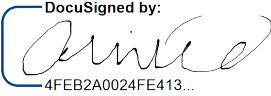
성명:  DocuSigned by:
668670CBE34E430...
Bishop Cynthia Fierro Harvey, Louisiana Episcopal Area


성명:  DocuSigned by:
3E40D647490946B...
Bishop Rodolfo Rudy Juan, Davao Episcopal Area, Philipp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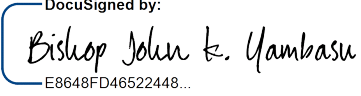
성명:  DocuSigned by:
ADD152430E3A41A...
Janet Lawrence, representing Affirmation, 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and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성명:  DocuSigned by:
F64B1AA0BF7E4C9...
Rev. David Meredith, representing Affirmation, 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and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member of UM Queer Clergy Caucus

성명:  DocuSigned by:
2069928286C641D...
Patricia Miller, representing The Confessing Movement, Good News, IRD/UM Action, and the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성명:  DocuSigned by:
4FEB2A0024FE413...
Dr. Randall Miller, representing Affirmation, 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and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성명:  DocuSigned by:
992461DBA394468...
Bishop Gregory Vaughn Palmer, Ohio West Episcopal Area

성명:  DocuSigned by:
E8648FD46522448...
Bishop John K. Yambasu, Sierra Leone Episcopal Area

위의 서명자 외에도, 2019년 7월 존 암바스 주교와 다른 중앙 회의 주교들이 소집한 초동 회의에 다음과 같은 개인이 참가하여, 그 과정에서 조정팀과 협의하였다.

Rev. Dr. Maxie Dunnam

Rev. Ginger Gaines-

Cirelli Rev. Adam

Hamilton

Rev. Dr. Mark Holland

Bishop Mande Muyambo, North Katanga Episcopal Area

Karen Prudente

Rev. Rob Renfroe

Rev. Kimberly

Scott

Rev. Jasmine R.

Smothers Mark Tooley